

[사 건 명] 행심 2019 - 4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내봉사 3일(6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학교내봉사 3일(6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서
면사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내봉사 3일(6시간) 등』 처분을 취소
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9. 2.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
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피해학생 ○○○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
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
다) 제17조에 의거 「학교 내 봉사 3일(6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2. 22.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9. 2.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자치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함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당시 학부모 위원은 2명만 참여하여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

나. 청구인은 확인서를 작성 시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고, 피해학생이 제출한 ○○○○ ■■■와 대화 자료도 대화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작되어서 위원들이 청구인과의 대화로 오해했으며, 피해학생과 제3자 간 대화 자료도 제3자 동의없이 제출되고 조작되었는바,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피해학생이 제출 한 조작된 자료들 및 일방적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에게 적법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학년 때 피해학생 어머니 부탁으로 피해학생을 배려하고 챙겨주면서 친구관계를 유지했는데 겨울방학이 시작된 후 피해학생이 청구인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서 서운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 페이스북 북에 있는 게시 글을 보고 이 사건 댓글을 달게 된 것이고, ■■■의 페이스북은 제한된 인원에게만 공개되었

고 피해학생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서 그 대상이 피해학생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댓글을 단지 10분여가 지난 후 피해학생이 문자로 연락해오자, 청구인은 바로 피해학생과의 오해를 풀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으며, 담임 선생님도 댓글 관련 화해가 됐던 사실을 확인했는데,

피해학생이 이후 ■■■로부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 ■■■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청구인과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던 일도 없던 일로 하겠다며 하면서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학교폭력신고를 한 것인데, 피해학생이 이후 대화를 거부하고 페이스북도 차단하여, 청구인은 수차 반성과 사과의 글을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보냈고, 학교선생님들을 통하여 사과의사를 전했지만 피해학생 측의 무응답, 거부로 사과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다.

라. 청구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보보안기능사의 꿈을 갖고 지금까지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입수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상실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전후 사정과 교육적인 입장, 선도가능성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내린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치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학부모위원 5명, 전문위원 2명,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이 사건 처리한 자치위원회는 재적위원 9명 중 5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개최했던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사안처리 상황 설명 시 관련 자료는 직접적인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최초 사안확인과정에 관련 학생의 진술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며, 양측의 확인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상호 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상반된 주장에 대한 판단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며,

피해학생이 제출한 ■■■와 문자대화자료, 제3자와 문자대화자료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문자 내용 대화자를 구분하였고, 제3자와 문자내역도 제3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사건 페이스북 댓글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제출 자료는 모두 자치위원회에 제출되었고 대면진술도 진행하였으며, 상반된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진위 판단, 자료에 대한 판단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지만, 회의진행 당시 제기되지 않은 이의나 자료 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들과 대면진술 등을 통해 청구인의 댓글을 가해행위로 판단하고 선도가능성 등도 심의·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피청구인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판단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각 보충서면, 청구인과 피해학생 각 확인서,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제출한 각 대화내용, 청구인 및 피해학생의 자치위원회에서의 각 진술, 청구인 및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각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학년 때 피해학생 어머니의 부탁 등으로 피해학생을 배려하고 챙겨주며 피해학생과 친구관계를 유지했지만, 청구인은 겨울방학 때 피해학생이 청구인에 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학생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 ○○○○가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학생에 대한 게시 글을 보고, 2019. 1. 24. ‘앵 그 정도라니 더 밑바닥인데 ㅋㅋㅋ’, ‘원래 갠 인생 자체가 안쓰러워’ 라는 이 사건 댓글을 달았다.

- 청구인이 댓글을 단지 10분여가 지나서 피해학생으로부터 문자 연락을 받고,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서로의 오해를 풀고 사과하며 화해했고, 담임 선생님도 댓글 관련 서로 화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해학생은 ○○○○로부터도 사과를 받으려고 했지만 ○○○○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바로 사과하지 않자, 피해학생은 청구인과의 화해도 없던 일로 하겠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학교폭력신고를 했지만 이후 무응답, 대화거부를 하여, 청구인은 수차 반성과 사과 글을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보내고, 학교선생님들을 통하여 사과의사도 전했지만 사과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의 위법성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학부모위원 5명, 전문위원 (학교폭력전담경찰관) 2명, 교원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사안의 경우 위원 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어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됐던 것으로, 자치위원회 구성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출된 자료 미공개 및 조작 등 여부

청구인은 전담기구 사안조사 시 관련학생 진술내용이나 제출한 자료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학생이 제출한 대화 자료가 대화자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도록 조작됐고, 제3자와 대화 자료도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출됐고 조작된 것이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제출한 조작된 자료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단정하였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사안처리 상황설명 시 진술서 등 관련 자료는 직접적인 공개 대상이 아니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두 학생의 문자 내용을 구분하였고, 자치위원회에 제출된 피해학생의 확인서(진술서)에도 ■■■가 말한 것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대화자를 오해한 사실이 없고, 제3자와 대화 자료는 제3자의 동의를 받고 제출했음을 확인했으며, 대화내용 중 일부가 삭제된 점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 페이스북 게시 글에 이 사건 문제 된 댓글을 달았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삭제된 내용부분이 이 사건 가해행위의 판단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 댓글의 학교폭력 해당여부

청구인은 ■■■ 페이스 북 글과 댓글이 제한된 인원에게만 공개되었고 피해학생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서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 페이스 북 게시 글과 청구인이 달았던 댓글이 제한된 친구들에게만 공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친구들 중 피해학생과 ■■■, 청구인 간 관계를 알고 있는 친구는 피해학생에 대한 내용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페이스 북 게시 글과 댓글이 곧바로 피해학생에게 알려졌으며,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연락하자 청구인도 바로 댓글이 피해학생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고서 사과하고 화해한 점,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은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의하면 광의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댓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절성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의 댓글을 학교폭력행위로 인정하고, 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1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판단 총 6점으로 판단하면서도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호 학교 내 봉사 3일(6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였는데,

반성정도 ‘매우 높음’의 판정점수는 1점이 아니라 0점인 점,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청구인에 대한 비방을 한다는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 페이스 북 게시 글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달았던 점, 피해학생이 연락하자 서로의 오해를 풀고서 바로 사과하며 화해했던 점, 피해학생이 이후 ■■■로부터 사과를 받으려 했지만 ■■■가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청구인과 화해도 없던 일로 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인 점, 청구인이 이후 수차 사과하고 화해하려고 시도했던 점, 청구인에 대한 선도 가능성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 면이 있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서면사과’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